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35호 2017. 12. 14.(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44호 정동 소곡 금자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2
- 사천시 고시 제2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5
- 사천시 공고 제1286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9
- 사천시 공고 1200호 어업면허 사항 공고(안)-----1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7-244호

정동 소곡 금자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일원 「정동 소곡 금자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정동 소곡 금자정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1,000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3)

4. 주요 사업내용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1,000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330	
	소곡문화마당 조성	문화마당 조성 A=1,218㎡	330	
지 역 경 관 개 선			550	
	소곡 유원지 환경정비	환경 정비 A=2,600㎡	60	
	주민화합 수변 쉼터 조성	쉼터 조성 A=8,014㎡	490	
지 역 역 량 강 화			70	
	교육 및 견학	1식	27	
	맞춤형 컨설팅	1식	18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1식	15	
	운영지원	1식	10	
부 대 비 용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50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2019년(3년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9,232							
1) 소곡문화마당 조성					1,218							
1	정동	소곡	1024-1	천	103,274	1,218	국	국토교통부				
2) 주민화합 수변 쉼터 조성					8,014							
1	정동	소곡	437	구	4,193	535	국	농림축산 식품부				
2	정동	소곡	454-4	유	602	565	군	사천시				
3	정동	소곡	455	유	1,980	1,954	군	사천시				
4	정동	소곡	447-3	유	2,123	1,725	군	사천시				
5	정동	소곡	432-3	유	1,901	1,699	군	사천시				
6	정동	소곡	457-2	구	23	24	군	사천시				
7	정동	소곡	456-4	유	2,830	1,512	군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4)

8.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지역개발과(055-831-324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5)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7-2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12. 1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17 - 10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17년 12월 12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위치표시용 부표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송포동 1526-1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220㎡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7년 12월 12일 ~ 2020년 12월 31일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경남지부 대표 강상헌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해안관광로 339(송포동)
8. 점용·사용의 허가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6)

허 가 조 건

1. 허가목적 준수 : 피허가자는 허가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허가 : 피허가자가 면적, 기간 등 본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본 허가 관련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 이행 등
 - 가. 시설물의 노후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시설물을 교체·폐기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해상에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시설물 인근 해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해상교통 안전대책(위치표시용 부표 유실 시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라. 동 시설물 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마. 위치 표시용 부표 설치 시에는 부표 관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도로 침하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상에서 일체 작업행위나 기타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바. 우리시가 송포동, 노룡동 일원 공유수면에 추진중인 송포일반산업단지의 구역계에 편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업단지 내 설치예정인 이착륙장과 직선거리로 100m 정도 이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시 구역계 변경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될 수 있고 대상지 편입, 송포산단사업 시행 중 및 시행 후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산업단지 내 시설물(이착륙장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예상될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기간 이내일지라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인이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7)

4. **지시사항 준수 및 이행** : 타 법령에 의한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타 법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시설물의 관리

가. 설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대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경우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시설보수,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6. 허가사항 취소 또는 행정처분

가. 공유수면관리법령과 허가조건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장래 산업단지 지정 및 공유수면 매립 등을 위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처분으로 인해 피허가자가 입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리청에게 일절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공공 또는 공익사업 등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으며, 불허가 처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관리청의 지시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일체의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 본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사용이 폐지된 경우 또는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피허가자 스스로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 **허가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 등** :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허가(기간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8)

9. 민원 해결 등

- 가. 동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사항 등이 발생 할 경우 피허가자가 보상 또는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나. 어업피해, 안전사고 등 각종 민원발생 시 전적으로 피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허가조건의 이행 : 위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허가자는 본 허가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허가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끝.

사 천 시 공 보

제535호(9)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7 - 1286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12. 1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12. 13. ~ 2017. 12. 2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6다2288	벤츠 S63AMG	허*	2017. 12. 7.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535 호 (10)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535 호 (11)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7- 1300호

어업면허 사항 공고(안)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한 어업면허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사 천 시 장

□ 어업면허 내역

면허번호	어업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포획· 채취물 종류	면적 (ha)	어업 시기	면허 유효기간	면허일자	어업권자		제한조건	비고
								주	소성명		
사천 제22호	소형정치망어업 (죽방렴)	사천 신수	멸치 외 2	0.23	1.1. ~ 12.31	'17.12.28. ~ '27.12.27.	'17.12.13.	경남 사천시 신수서길 208(신수동)	강청사	수산물 계법령 준수	사천정치 제1호 재개발

※ 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 : 사천시 해양수산물과 비치